니다.

- 1. 청구서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6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5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이 특약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주계약 및 사망보장특약" 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회사는 이 특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을 제외하고 남은 사망보험금에 대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7조 특약의 성립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계약자의 청약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청약

계약자가 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특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로서 이를 회사가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제8조 특약의 무효

- 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합니다.
 - 1. 보험수익자가 자연인이 아닌 경우
 - 2. 보험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3.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경우. 다만, 보험수익자 중 1인 이상이 실명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② 회사는 이 특약에 의하여 "주계약 및 사망보장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 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여 보험수익자는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이 특약에 따라 "주계약 및 사망보장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도 피보험자의 부당한 행위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보험수익자는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보험금을 반환하지 않는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환급금 등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급금에서 아직 반환받지 못한 보험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제9조 특약의 소멸

-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1.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다만,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주계약이 소멸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 3.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보험금의 지급이 완료된 경우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특약보험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10조 보험료의 납입 및 특약의 보장개시

- ① 이 특약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는 없습니다.
-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일

제11조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0조(보험료의 납입 및 특약의 보장 개시)를 준용합니다.

제5관 계약자의 해지

제12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없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6관 기타사항

제13조 주계약 약관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규정을 따릅니다.

22121522000000171443 사후 사망보험금 신속지급특약

2883

부표1

재해분류표



별첨2 [표 1] 참조

선지급서비스특약







약 관 목 차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의2 통화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6조 보험금의 청구

제7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8조 특약의 성립

제9조 특약의 소멸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10조 보험료의 납입 및 특약의 보장개시

제11조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제5관 보험금 대리청구인의 지정 및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항

제12조 적용대상

제13조 보험금 대리청구인의 지정

제14조 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제15조 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

제16조 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절차

제6관 기타사항

제17조 주계약이 2인(3인, 多人)보장보험계약인 경우의 특칙

제18조 다른 특약의 취급

제19조 주계약 약관규정의 준용

[부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선지급서비스특약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남은 생존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경우 주계약 또는 특약에서 보장하는 사망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피보험자에게 미리 지급하여 피보험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 특약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 1. 주계약 및 사망보장특약 : 주계약 및 그에 부가된 사망을 보장하는 특약을 말합니다.
- 2.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 및 사망보장특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 2. 보험수익자 : 이 특약의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와 동일인으로 합니다.
- 3. 종합병원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4. 보험기간 : 이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으로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한 날부터 "주계약 및 사망보장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년(12개월) 이전까지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 및 사망보장특약"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년(12개월) 이전까지로 합니다.

제2조의2 통화의 정의

보험종목	통화의 정의
원화형	보험금의 지급에 사용되는 통화는 대한민국의 통화(그 단위는 '원'이라합니다)로 합니다.
달러형	보험금의 지급에 사용되는 통화는 아메리카합중국의 통화(그 단위는 '달러'라 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예금보험에 따른 지급보장에 관련한 통화는 대한민국의 통화로 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특약보험기간 중 종합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자가 실시한 진단결과 피보험자의 남은 생존기간이 6개월 이내라고 판단한 경우에 피보험자의 신청에 따라「"주계약 및 사망보장특약" 사망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피보험자에게 선지급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선지급한 경우 선지급 보험금에 해당하는 "주계약 및 사망보장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금 지급일에 감액처리 하며, 그 감액된 부분에 대한 해약환급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금이 선지급된 이후 "주계약 및 사망보장특약"의 약관에 따라 사망보험금의 청구를 받더라도 그 감액된 부분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이 선지급되기 전에 "주계약 및 사망보장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의 청구를 받았거나 사망보험 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 특약에 따른 보험금의 청구가 있더라도 보험금을 선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남은 생존기간에 해당하는 선지급 보험금에 대한 이자 및 보험료를 뺀 금액 을 지급하며, "주계약 및 사망보장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상 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지급 보험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 ④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액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의 "주계약 및 사망보장특약"의 사망보험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이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는 경우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18조(다른 특약의 취급)에 관계없이 보험금 이 청구된 날을 기준으로 "주계약 및 사망보장특약"의 사망보험금의 비율에 따라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감액

보험료, 보험금, 계약자적립액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입금액을 계약시 선택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줄이는 것 (이에 따라 보험료, 보험금 및 적립액(해약환급금)도 줄어듭니다.)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계약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의 고의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 보험금의 청구

- ① 피보험자 또는 제16조(보험금 대리청구인의 지정) 제1항에서 정의한 대리청구인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 중해당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병명 및 분류코드 기입), 각종사고 증명서류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5. 기타 피보험자 또는 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5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부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습니다.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8조 특약의 성립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계약자의 청약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주계약 및 사망보장특약"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청약

계약자가 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특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로서 이를 회사가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제9조 특약의 소멸

-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1.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다만,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주계약이 소멸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 3.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보험금의 지급이 완료된 경우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특약보험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10조 보험료의 납입 및 특약의 보장개시

- ① 이 특약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는 없습니다.
- ②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 및 사망보장특약"에서 정한 보장개시일과 같습니다. 다만, 제8조(특약의 성립) 제2항에 따라 이 특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청약을 승낙한 때부터 이 특약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제11조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 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3조(보험료의 납입 및 특약의 보장 개시)를 준용합니다.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일

제5관 보험금 대리청구인의 지정 및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항

제12조 적용대상

이 특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13조 보험금 대리청구인의 지정

- ①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청구인은 제14조(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지정 또는 제15조(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에 의한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합니다.
 -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 촌 이내의 친족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2조(적용대상)의 보험수 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한 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 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14조 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대리청구인을 변경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 2. 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제15조 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

- ① 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 중 해당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병명 및 분류코드 기입), 각종사고 증명서류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

증)

- 4. 피보험자 및 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5. 기타 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6조 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대리청구인이 제15조(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2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 서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을 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관 기타사항

제17조 주계약이 2인(3인, 多人)보장보험계약인 경우의 특칙

- ① 주계약이 2인(3인, 多人)보장보험계약인 경우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주계약 및 사망보장특약" 사망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계약 및 사망보장특약" 사망보험금의 전부」로 대체합니다.
- ② 주계약이 2인(3인, 多人)보장보험계약인 경우 제18조(다른 특약의 취급) 제1 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 및 사망보장특약" 사망보험금의 전부를 이 특약의 보험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고 주계약의 소멸규정을 준용합니다.

제18조 다른 특약의 취급

- ① 이 특약에 따라 주계약 사망보험금의 전부가 선지급된 경우 주계약은 소멸되는 것으로 하며, 주계약에 다른 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② 주계약 사망보험금의 일부가 지급된 경우에는 각 특약의 효력은 계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19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부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7조 제2항 관련)

구 분	적 립 기 간	지급이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사지그 내마니하그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선지급 사망보험금 (제3조)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3. 가산이율 적용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① 소송제기
 - ② 분쟁조정신청(다만, 분쟁조정신청 대상기관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분쟁조 정위원회로 합니다)
 - ③ 수사기관의 조사
 - ④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 ⑤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 ⑥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 ⑦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